

<p>4.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 서 그 사유</p> <p>제51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p> <p>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 서는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p> <p>제52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 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 짚형자동차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9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그리면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 짚형자동차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p>	<p>적으로 한다.</p> <p>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 씨 당 세 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11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140원</td> </tr> <tr> <td>3,000씨씨 이하</td> <td>12원</td> <td>165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15원</td> <td>200원</td> </tr> </tbody> </table> <p>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p> <p>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십시오.</p> <p>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따라서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증</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증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배기량	씨 씨 당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배기량	씨 씨 당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p>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p> <p>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94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하여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鍾路區 昌信洞 所在 260㎡, 29坪, 住宅銀行 住宅組合, 이것을 隨意賣却한다고 되어 있지요?</p> <p>○財務局長 朴亨錫 네.</p> <p>○鄭興鎮委員 그렇지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좀 아는데,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성곽도로가 지금 開設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으로 많이 公園으로는 實效性을 잃은 日帝時代 때부터 指定된 公園用地가 있어요. 그래서 昨年末에 市長께서 와서 여기는 公園用地로 이미 實效性을 잃은 곳이다 이렇게 言明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有力團體라고 보이는 곳에는 쉽게 賣却해 주고, 그렇게 庶民의 財產權을行使할 수 있도록 公園用地로 끊어놓고, 公園으로 쓸모를 잃은 그런 곳을 그냥 放置해 두면서 가난한庶民들에게는機會를 주지 않는 이런 行政이 아직도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 地域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點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p> <p>지금 보면 소위 우리가 官邊團體로 불리우는 自由總聯盟에게 보라매公園內에 있는 事務室을 無償으로 貸與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委員이 자주 느낍니다만 洞事務所나 區廳이나 가면 이런 官邊團體가 버젓이 事務室을 無償</p>	<p>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생이 野黨委員이라 이렇게 느끼는 바는 아닙니다. 衡平에 어긋나게 無償으로 市有財產을, 市民의 財產을 어느 한 쪽에만 無償으로 貸與해 주는, 더군다나 市廳이나 區廳 廳舍뿐만 아니라 區民會館이 되어 있지도 않고 狹小하기 이를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社會團體에게 無償으로 供與해 준다는 이 點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財務局長 朴亨錫 鄭興鎮委員님 質問에 대하여 答辯해 올리겠습니다.</p> <p>우선 多數 住民들이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都市計劃上 公園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河川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地域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都市計劃 變更節次를 거치고, 또 이런 것은 좀 根本的으로 이미 低所得 住民이 密集되어 있는 이런 地域에 대해서는 根本的으로 지금 市에서 檢討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關係部處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對策을 講究할 計劃으로 현재 調查中에 있습니다.</p> <p>○鄭興鎮委員 調査 中이 아니라 며칠 전에 TV나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 公園用地를 많이 解除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p> <p>○財務局長 朴亨錫 네, 그래서</p> <p>○鄭興鎮委員 市의 方針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데는 道路幅을 넓힘으로써 公園으로 쓸모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政策的으로 그렇게 하는가 해서 한번周知시키는 바입니다.</p> <p>○財務局長 朴亨錫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參考로 말씀드리면 各 區에서 區單位의 都市計劃을 대부분이 昨年 年末까지 用役들을 마쳐서 금년에 이제 이것이 本廳에서 종합적으로 檢討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대부분이 이렇게 이미 低所得層이 密集되어 있는, 실제로 公園으로서 管理할 그런 對象이 될 수 없는 그런 評단이 가는 곳은 일단은 解除하는 方向에서 檢討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内容으</p>
--	---